

HERA

HERA 주택 및 경제적
권리 옹호단체

연락처:

(510) 271-8443 내선번호. 300

inquiries@heraca.org

www.heraca.org

P.O. Box 29435

Oakland, CA 94604



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여성
및소녀 지위 위원회(California
Commission on the Status of
Women and Girls)의 협찬으로
실현되었습니다.

귀하는 가정폭력, 성폭력,
스토킹, 인신매매, 노인 학
대, 또는 의존상태 성인
학대의 피해자입니까?



귀하는 퇴거 당하지 않을
권리가 있습니다

법은 개인 주택 임대
인이 가정폭력 가해
자가 저지른 가정폭
력을 사유로 귀하를
퇴거시킬 수 있는 경
우를 제한하고 있습
니다.

개인 주택

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
-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. 학대 가해자에게 대한 접근금지명령 및 다른 보호 조치를 받은 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됩니다 (공정주거법, 42 U.S.C. 3601 et seq.; Bouley v. Young-Sabourin, 394 F. Supp. 2d 675 (D. Vt. 2005)).
- 집안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로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 (캘리포니아주 민법 § 1946.8(c)).
- 귀하의 집에 가정폭력의 생존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거 당하거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(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§ 1161.3).

이러한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:

- 가해자가 귀하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
- 귀하의 집에 가해자의 방문이 금지된 경우
- 임대인이 가해자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물리적 위험 혹은 방해라고 생각할 경우

귀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:

임대인에게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공하여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증거 자료는 임시 접근금지명령, 경찰 신고서, 의료서비스 제공자/귀하/진술 자격이 있는 제3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서가 될 수 있습니다. (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1161.3조).

정부보조주택

공공주택이나 제8조 같은 연방 주택 프로그램의 임차인의 경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퇴거에 대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보호는 가해자인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
- 가정폭력을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 위반사항으로 간주 받지 않을 권리
- 가정폭력이 임대차계약이나 바우처 종료에 대한 "합당한 사유"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
- 귀하의 해당 프로그램이 기타 범죄 무관용 원칙하에 있더라도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직접 관련된 범죄 행위로 인해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 (34 USC §12491(b)(3)(a)).

중요 사항:

임대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이 실질적이고 즉각적 위협에 처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귀하는 퇴거 될 수 있습니다 (34 USC §12491(b)(3)(C)(iii)).